



제 419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경제사업 담당 상임이사 폐지〉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92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경제사업 담당 상임이사 폐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8.
3. 회 부 일 : 2024. 1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경제사업 담당 상임이사 폐지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경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이사를 폐지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와 집행간부 체제로 수협중앙회의 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9조, 제134조 및 제135조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7조(이사회) ①·② (생략)	제127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u> 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조정 및 소관 업무의 경영평가	4. <u>사업전담대표이사의</u> ----- -----
5. <u>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u> 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5. <u>사업전담대표이사의</u> ----- -----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① -- ----- -----

둔다. 1. · 2. (생 략) <u>2의2. 제13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임이사</u> 3.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9조(임원) ① (생 략) ② 제1항의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상임으로 한다. 1. (생 략) <u>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이사</u> 3. (생 략)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 ② (생 략) <u>③ 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u> ④ ~ ⑨ (생 략)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 · ② (생 략) ③ 이사회는 <u>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의</u> 경영 상태를 평가한 결과 경영 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u>사업</u>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사업전담대표이사의</u>----- ----- ----- ----- ----- -----<u>사업전</u>
---	---

<u>전담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 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u> ④ (생략)	<u>담대표이사의</u>----- ----- ----- -----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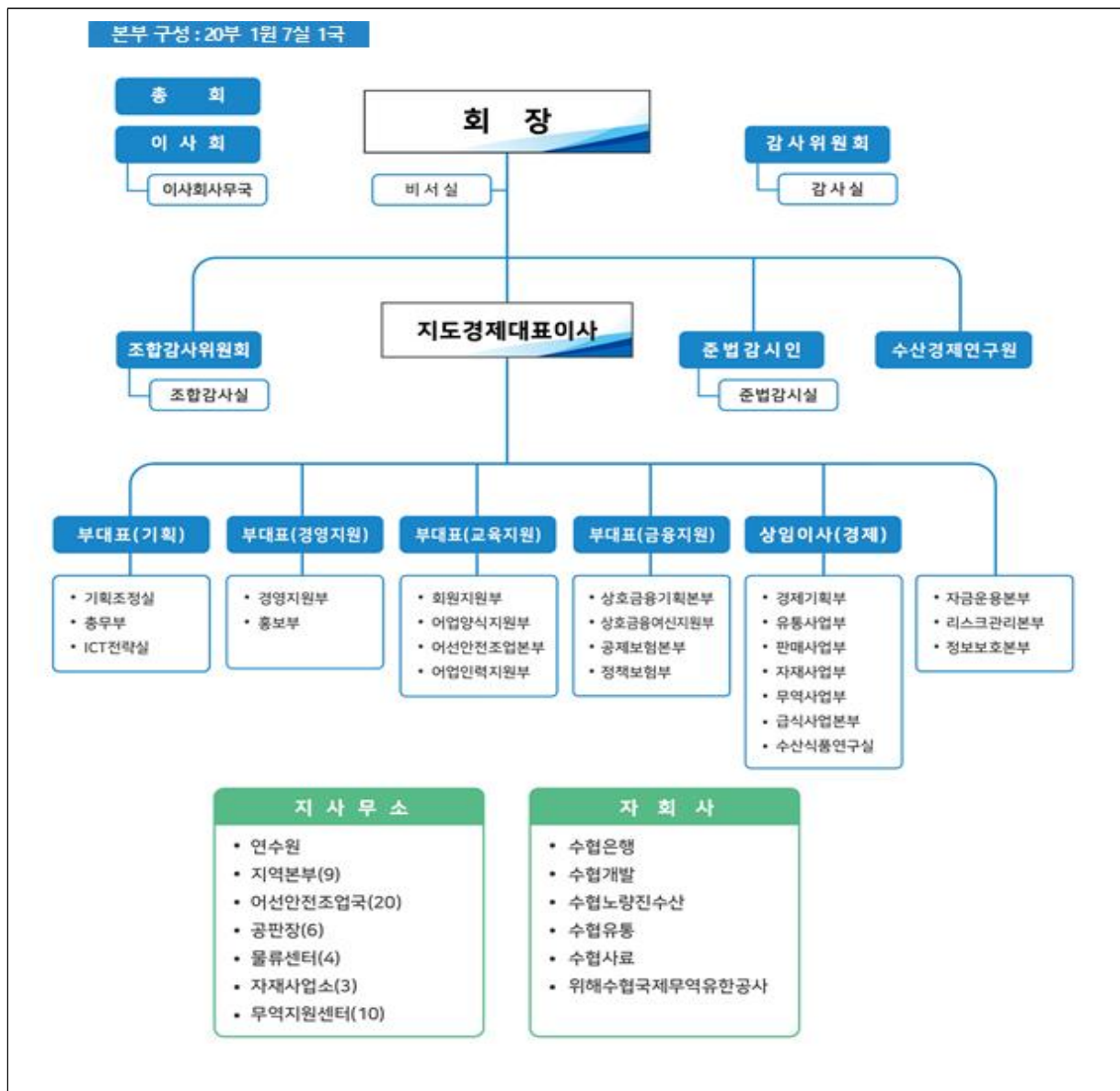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함) 제129조는 수협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과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이하에서 “대표이사”라 함)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두도록 하고, 임원 중 대표이사와 경제사업 담당 이사,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표이사는 상임임원으로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 대외무역 등 회장¹⁾ 및 감사의 직무를 제외한 나머지

1) 회장은 회원에 대한 감사(조합감사위원장에게 위임), 회원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회의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대표이사 소관 하에 ‘경제사업²⁾을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있으며, 그 밖에 4명의 집행간부(기획·경영지원·교육지원·금융지원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여 각각의 사업영역을 담당하는 구조임.

[2024년 현재 수협중앙회 조직도]



홍보, 수협법 제142조에 따른 중앙회의 지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사업 및 대외활동, 의료지원사업, 다른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국제민간어업협력사업, 그 밖에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소관으로 함.

- 2) 경제사업: 회원과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 회원 및 중앙회 출자회사의 경제사업의 조성·지도 및 조정에 관한 사업

□ 2016년 5월 수협법 개정 이전 수협중앙회는 중앙회장 1명과 사업 전담대표이사 2명(지도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대표이사 각 1명) 외 3~5명의 상임이사를 두었음.

이후 2016년 5월 수협법을 개정하면서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하고, 의사결정의 효율화와 사업별 전문경영 체제 도입을 위해 각각의 사업을 상임이사가 아닌 집행간부가 담당하는 집행간부제로 전환하였으나, 경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를 유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재 남아있는 경제사업 담당 상임이사를 폐지하고, 경제사업도 다른 사업과 같이 집행간부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16년 당시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한 것은 이사회 및 상임임원의 정수를 축소해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³⁾으로, 개정안 역시 조직의 간소화와 경영구조 효율성 제고 및 경제사업에 대한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영역에 각종 구매·보관·판매·제조사업 및 수산물 처리·가공·제조 등을 포함하여 회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3) 2016.5.29. 수협법 개정(법률 제14242호)

-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 및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의사결정의 효율화 및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 주요내용 :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29조제2항, 제136조제1항 신설 등)

또한, 현재 상임이사 소관으로 경제기획부, 자재사업부, 수산식품 연구실, 유통사업부, 판매사업부, 무역사업부, 급식사업본부 등 다수의 업무분야가 배속되어 있고, 직제상 전체 정원의 28.5%에 해당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다른 집행간부 소관 업무에 비해 상임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임.

[연도별 경제사업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중 앙 회	12,235	13,408	14,567	15,028	13,081	14,513	18,525	17,099
회 원 조 합	48,142	55,355	56,328	55,779	59,091	59,260	63,809	64,429

자료: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사업부서별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경제 (상임이사)	집행간부 소관				기타
				기획	경영	교육*	금융	
정원	인원	1,421	405	182	25	327	270	212
	비율	100	28.5	12.8	1.8	23.0	19.0	14.9
현원	인원	1,268	363	157	21	309	225	193
	비율	100	28.6	12.4	1.7	24.4	17.7	15.2

자료: 수협중앙회

개정안은 이처럼 경제사업이 전체 중앙회 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및 해당 사업이 중앙회 및 회원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제사업분야에 대한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수협중앙회는 개정안 의결 시 현재 상임이사가 전담하고 있는

경제사업을 집행간부와 본부장 등이 분장하여 담당하는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⁴⁾.

□ 다만, 상임이사와 집행간부는 모두 대표이사의 전담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의 임원으로서 이사회⁴⁾의 일원이 되고, 경영상 책임을 공유하며, 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임되는 반면,

집행간부는 이사회⁴⁾의 일원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의해 중앙회 직원 중에서 임면⁵⁾되며,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 처리하는 등 두 직위 간 선임·해임절차, 임원지위 및 법적 책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상임이사를 폐지하고 집행간부로 이를 대체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수협중앙회 업무 책임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 점, 이사회에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이 감소하게 되는 점 등 상임이사와 집행간부 간 지위·책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상임이사와 집행간부의 차이]

4) 현재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부문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5)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 외의 자 중에서 특별임용 가능(정관 제76조의2제4항)

구 분	상임이사	집행간부
임명방식	○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총회가 선출하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함 * 실제 운영상으로는 직원 중에서 상임이사를 선출함	○ 대표이사가 직원 중에서 임면 *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면 가능
임 기	2년	2년
신분 및 권한	○ 경제사업 담당(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은 없음) ○ 이사회 상임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내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의안제외권 보유 ○ 회장 궐위 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	○ 대표이사의 업무 보좌 ○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 지배인 자격에 의한 대리권을 가짐 ○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의무 및 책임	○ 성실의무	○ 성실의무
	○ 손해배상책임 - 직무수행 시 고의·과실로 중양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직무수행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손해배상책임 - 징계변상규정 등에 따른 책임을 짐
	○ 이사회 불법행위 책임 - 이사회 의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찬성한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해당 없음)
	○ 겸직금지의무 - 중양회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종사할 수 없음 - 직무와 관련된 영리목적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이사회 승인 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 종사 불가	○ 겸직금지의무 - 직무와 관련된 영리목적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이사회 승인 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 종사 불가
	○ 형사책임	○ 형사책임

□ 또한, 개정안 부칙은 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상임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시 수협법상 상임이사를 둘 근거가 사라지므로, 해당 경과조치만으로는 임기보장 외 상임이사의 지위 및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해질 소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 상임이사의 지위 및 권한행사의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집행간부제로의 전환 등 조직구조 개편의 시기를 현임 상임이사의 임기만료 후부터 시작할 것인지 여부 등 개정법의 적용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 기관의 의견으로, 수협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임이사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우선, 상임이사도 대표이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임원에 해당하므로, 현재 집행간부(부대표)들이 관할하고 있는 다른 사업 부문과 달리 경제사업만 상임이사가 담당토록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경제사업의 규모 확대 및 업무 다양화로 인해 1명의 상임이사가 경제사업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업무범위가 과중한 측면이 있으며, 그 밖에, 농협 등 유사기관의 경우 상임이사에 해당하는 직위가 없고 모두 집행간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⁶⁾, 상임이사는 그 선출을 위해

6) 농협, 임협 등 다른 협동조합중앙회의 조직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자료2] 참조

이사회, 인사추천위원회, 총회 개최가 필요하여 집행간부에 비해 행정절차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을 사유로 들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경제사업의 업무가 과중하고 유통사업의 전문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제상임이사의 역할·기능이 사실상 집행간부와 동일하게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이므로, 개정안과 같은 집행간부로의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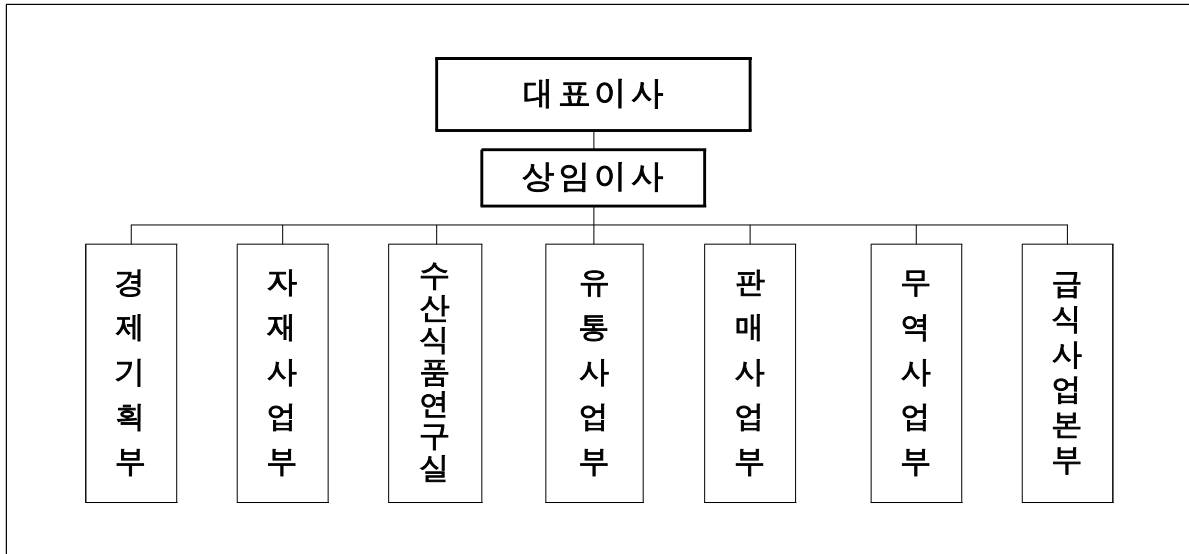
참고 1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 직제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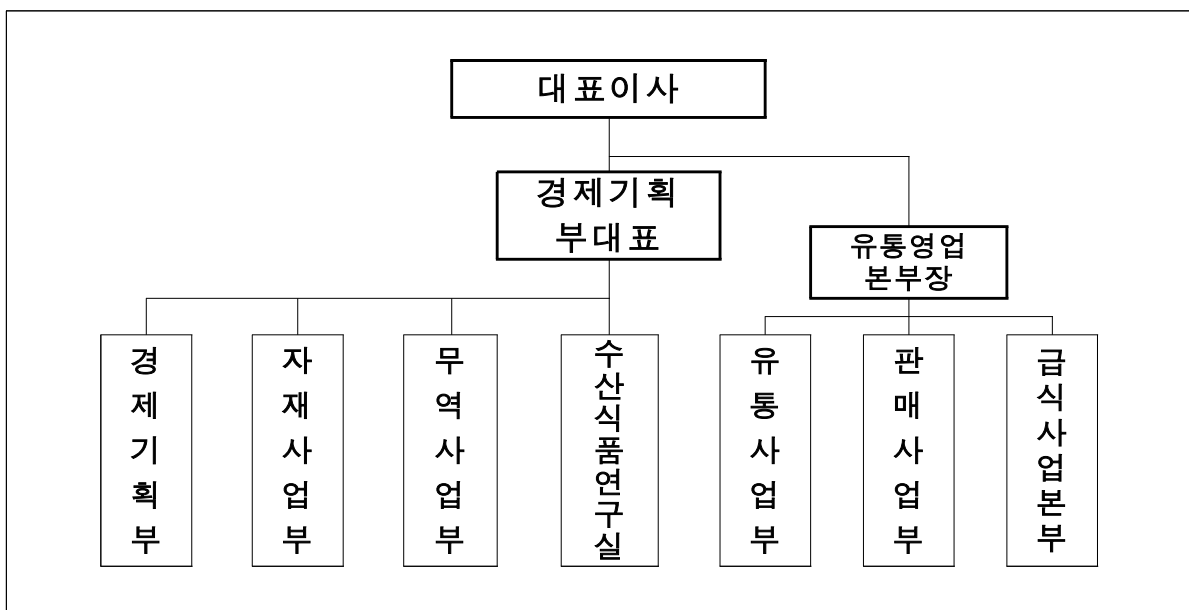
□ 사업역량 극대화를 위한 관리·지원기능과 유통·판매기능 분리

* 법 개정 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

< 현 행 >



< 개 편(안) >



참고 2

유사기관 임원 및 집행간부 제도 현황

구 분	수 협	농 협	산림조합
임원	회장 1명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 (수협법 제129조제1항)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 포함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 (농협법 제126조제1항)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 (산림조합법 제100조제1항)
상임 임원	사업전담대표이사 경제사업 담당 이사 감사위원장 (수협법 제129조제2항)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감사위원장 (농협법 제126조제2항)	사업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산림조합법 제100조제2항)
집행 간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수협법 제136조)	사업대표이사등(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이하 같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직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농협법 제131조)	사업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산림조합법 제105조)
	- 명칭 : 상무 - 임기 : 2년. 연임시 1년 단위(다만, 두 번에 한하여 연임가능) - 임면권자 : 대표이사 - 정수 : 4인 이내 - 업무 : 대표이사 보좌 및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처리(수협중앙회 정관 제76조의2)	- 명칭 : 상무 -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정년 61세 - 임면권자 : 사업전담대표이사등 - 정수 : 규정으로 정함 - 업무 :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보좌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처리(농협중앙회 정관 제63조)	- 명칭 : 상무 - 임기 : 2년. 연임시 1년 단위 - 임면권자 : 사업대표이사 - 정수 : 7명 이내 - 업무 : 사업대표이사 보좌 및 사업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처리(산림조합중앙회 정관 제7조)